나 기타암

22 섬유염색업자에서 발생한 신세포암

1 개 요

근로자 ○○○은 2009년부터 5년 11개월간 □섬유공업사에서 나염 프린트 생산직으로 근무하였다. 그 후 2015년 □대학병원에서 신세포암으로 진단 받았고 같은 해에 사망하였다.

2 작업환경

○○○은 2009년부터 나염공정에서 근무하였다. 작업장 내에는 나염기 6대가 있으며 중간에 위치한 나염기 1대를 담당하였다. 담당업무는 나염 생산 보조업무로 프린트 작업을 위한 원단 및 색호(배합된 염료)의 운반, 나염프레임(가다) 셋팅 보조, 색호(염료)를 나염기계에 붓는 작업이다. 색호는 나염기 뒤편에 위치한 배합실에서 만들며 견본색과 일치하도록 여러 종류의 염료를 혼합한다. 근로자는 배합작업을 하지 않았으며 다만 배합된 색호를 나염기계 근처로 운반하고 나염기 스크린에 바가지로 부어 넣는 일을 하였다. 주야 교대근무 하였고 근무시간은 주간 근무시 7시 30분~18시 30분, 야간 근무시 18시 30분~익일 7시 30분으로 휴식시간을 제외한 순 근무시간은 10시간이다.

나염기 입구쪽에는 후드가 설치되어 있지만 색호를 붓는 공간에는 국소배기장치가 설치되어 있지 않다. 그리고 마스크, 장갑, 보호의 등 보호구 착용은 전무하다.

3 해부학적 분류

- 기타암

4 유해인자

- 중금속(분진)

5 의학적 소견

○○○은 2015년 2월 발견한 좌측 옆구리의 산통 및 육안적 혈뇨로 개인의원에 내원하였으며, 검사 상 이상소견을 보여 CT 촬영하여 우측 신장의 신세포암종 소견에 따라 □대학병원으로 의뢰되어 진료를 받았다. 조직검사상 우측 신장의 신세포암종으로 진단되었으며, 추가적인 검사를 통하여 어깨뼈, 갈비뼈, 늑막 및 복강 내 전이로 보존적 치료를 시행하였다. 2015 년 4월에 2주가량 보존적 치료를 위해 입원하였으며, 퇴원후 사망하였다. 흡연과 음주력은 없었으며, 특이적인 가족력은 없었다.

6 고찰 및 결론

근로자 ○○○는 2009년 5월 □섬유공업사에 입사하여 약 5년 11개월간 주로 날염 공정에서 나염작업을 수행하였다. 근로자의 질병과 관련된 작업환경요인으로 X-선, γ -선, 트리클로로에틸렌, 비소 및 그 무기화합물, 카드뮴 및 그 화합물 등의 유해인자가 있다. 근로자는 지속적으로 염료를 취급하였지만 염료 중 신장암을 유발할만한 물질은 발견되지 않았으며, 염료와 신장암 발병과의 연관성도 알려져 있지 않다. 따라서 근로자의 상병은 업무관련성이 낮은 것으로 판단되었다. 끝.